

소 장

- 원 고
1. 오OO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진보네트워크센터
 2. 윤OO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3. 김OO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5층
함께하는시민행동
 4. 변OO
서울 마포구 합정동 454-3번지 금악빌딩 3층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5. 윤OO
서울 마포구 합정동 454-3번지 금악빌딩 3층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6. 김OO
서울 마포구 합정동 454-3번지 금악빌딩 3층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8, 3층(서초동, 일신빌딩)

전화 : 02-2038-3620, 팩스 : 02-2038-3061

- 피 고**
1.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앰피티어터 파크웨이 1600
번지(우편번호 94043)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
대표이사(Chief Executive Officer) 레리 페이지(Larry Page)
(전화번호 : +1 650 253 0000, 팩스 : +1 650 253 0001)
 2.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22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매튜스캇주커먼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대한민국내에서 활동중인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로, 원고 오 OO, 윤OO, 윤OO, 김OO은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 이하 ‘피고 구글’이라 합니다)에 가입해 Gmail 등 피고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고, 원고 김OO, 변OO은 피고 구글이 제공하는 기업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원고별 이메일 내역>

원고	이메일
오OO	a*****@gmail.com
윤OO	r*****@gmail.com
김OO	n***@action.or.kr
변OO	m*****@amnesty.or.kr j*****@amnesty.or.kr
윤OO	a*****@gmail.com
김OO	a*****@gmail.com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구글코리아’라 합니다)는 2004. 3. 15. 설립된 후 온라인 광고 상품 및 서비스와 다이렉트 마케팅(DM)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활동중인 국내법인으로, 국내 법에 따라 2006. 4. 18.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으며 피고 구글의 한국지사로서 피고 구글을 대표해 한국 내 서비스제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소재기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구글은 세계적인 검색서비스 제공업체로 Google검색, Youtube, Gmail 등 60여개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광고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고 구글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사람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피고 구글코리아는 피고 구글의 한국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이를 기초로 광고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4. 1. 28.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기도 합니다.

[갑 제1호증 보도자료 참조]

한편, 피고 구글은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 NSA의 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수집에 협조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피고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유출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신문기사 참조]

이에 대한민국에서 정보인권증진과 관련한 NGO활동을 하면서 전세계에

거주하는 활동가, 전문가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Gmail서비스 이용내역도 피고들 외에 제3자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이용내역(특히 Gmail서비스 이용내역)의 제공은 원고들의 활동이 전적으로 합법적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통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구글이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2. 10. 미국법인인 피고 구글과 피고 구글코리아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원고들에 관한 Google 계정상 개인정보와 Google 계정을 이용한 정보(특히 원고들의 Gmail 계정을 이용해 착발신된 메일의 착발신대상, 메일의 내용)를 Google 외의 회사, 조직 또는 개인 등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만약 제공하였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의 내역을 원고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의1 내지 2 각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 전자우편 참조]

그러나 피고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고 구글은 2014. 2. 22.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답하지 않은 채 ①피고 구글코리아는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G-mail)의 공급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고, ②피고 구글은 단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할 뿐 개별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 이용여부 및 그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원고들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갑 제4호증 전자우편 참조]

이후 원고들은 2014. 5. 20. 구글, 구글코리아에게 다시 한번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Gmail 서비스 이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서 참조]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구글 및 구글코리아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 보유내역 및 타인에게 제공한 여부와 이용, 제공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응하고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근거

가.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의 공개청구에 관하여

- 1) 피고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개인별로 분류·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피고 구글이 제공하는 Gmail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 역시 Gmail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쳤고, 현재까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없이 피고들이 제공하는 Gmail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을 식별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개인별로 개인정보를 분류·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할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런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

원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특히 Gmail서비스 관련 정보)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759판결)]

이와 관련하여 피고 구글의 Gmail 등 서비스 제공이 미국 또는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

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강행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피고 구글코리아 역시 대한민국법을 준수해야 할 국내법인으로서 피고 구글의 자회사로 개인정보팀을 따로 운용하고 있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구글의 서비스 특성상 피고 구글코리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들의 요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정보통신방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방법상 보장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권리행사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방법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정보통신방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적법한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합리적 이유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침해라 할 것입니다.

피고 구글이 전세계적으로 검색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지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적법한 요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원고들의 요청에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단순히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피고들의 영업활동측면에서 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재산상 권리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은 산술적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규범적으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요청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은 이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원고들에게 1인당 최소한 5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피고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에 손쉽게 접근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2014. 2. 22. 피고들에게 보낸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500,000원 및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보도자료 |
| 1. 갑 제2호증 | 신문기사 |
| 1. 갑 제3호증의1 |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서 |
| 1. 갑 제3호증의2 |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서 |
| 1. 갑 제4호증 | 전자우편 |
| 1. 갑 제5호증 |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 제공요청서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부 |
| 1. 소송위임장 | 1부 |
| 1. 담당변호사지정서 | 1부 |
| 1. 법인등기부등본 | 1통 |

2014. 7.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 흥 석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